2025년 물기술 으뜸 소부장 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[으뜸 스마트 지원사업]

물산업 소부장 육성을 위해 선정한 핵심 소부장 품목 20개 중 스마트 물관리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"으뜸 스마트 지원사 업"(기존 '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'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 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5. 3. 13.(목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5년 2월 12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

1. 사업목적

-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 및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소부장 핵심 20개 품목* 중점 육성
- * 소부장 핵심 20개 육성폼목
 - 수량측정기, 수질측정기, 제어기, 센서, 운영S/W, 펌프, 교반기, 고압분리막, 저압분리막, 자외선 소독기, 송풍기, 밸브, AOP장치, Non-Membrane Filteration, PVC관, 슬러지처리건조/열처리, 슬러지처리농축/탈수기, 수처리제, 염소소독기, 강관
- 물기술·제품 스마트 기능 탑재를 위한 기술개발, 성능실증 등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

2. 모집개요

- '25년 신규 모집 사업비 : 6억원
 - 국가정책변화 등으로 예산 변경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
- 지원규모 : 2개사 내외(기업당 3억원 이내)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최장 3년

○ 지원분야 : 소부장 핵심 20개 품목* 제조업체

*수량측정기, 수질측정기, 제어기, 센서, 운영S/W, 펌프, 교반기, 고압분리막, 저압분리막, 자외선 소독기, 송풍기, 밸브, AOP장치, Non-Membrane Filteration, PVC관, 슬러지처리건조/열처리, 슬러지처리농축/탈수기, 수처리제, 염소소독기, 강관

모집 기술

- 물기술제품의 성능개선으로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 또는 초격차 구현
- 제품 자체 스마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
- 기계식 제품과 융합하여 디지털 기능 구현이 가능한 기술
- 2개 이상 기술제품 ICT, IoT 융합으로 기능 구현

3. 지원대상

-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물기업
 - ※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%이상,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 (기관)까지 참여 가능, 단 공동기관 참여율은 10% 이상
- O 위 자격을 갖춘 기업을 **주관기관으로** 하여 산·학·연 공동 참여 가능

4. 지원내용

- 국고보조금 건당 건당 3억원 이내/년, 최장 3년 지원
 - ※ 회계연도에 맞추어 3년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음
 - 기술개발, 실증화, 사업화 비용의 최대 70% 지원

<참여주체별 지원비율>

구분	중소기업, 학계 및 연구계	중견기업	대기업
국고보조금 지원비율	70%	60%	55%
자기부담금	30%	40%	45%

- ※ (중소기업 예시) 총사업비 4.29억 = 보조금 3억 + 자기부담금 1.29억
- ※ 자기부담금의 경우 기업은 전액 현금 매칭, 학교 및 연구소는 인건비에 한해서 현금 10%이상+현물 90% 미만

- 공동참여 시 참여율에 따른 지원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
-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자*에 한해 인건비 지급
- *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함
- 인건비는 과제별 연간 총사업비의 14%이하, 6천만원 한도 내 참여 율 50~100% 산정
- 발생이자, 공제 매입부가세 등 제외

5. 신청 제외 대상

- 중복지원 :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기술
 - ※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거나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을 사업목표로 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
-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·사업화(성능테스트 등)
- 특허, 지식재산권,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
-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료를 체납* 중인 경우
 - * 연장·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
- 신청기업이 휴·폐업인 경우
-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%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
 - * 3년 이내 창업된 기업의 경우 1개 사업년도 이상 부채비율 300% 미만 및 1개 사업년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
- 「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

6. 선정평가

○ 선정절차



- ※ 자격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확인 시.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
- ① 서류심사 : 지원자격, 중복성, 제외대상, 제출서류 누락, 가점 항목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평가
 - ※ (심사위원) 전문가(물산업 분야, 회계전문가 등) 5인 내외 구성
- ② 발표평가 : 신청기관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및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등 심층 평가(붙임 참조)
 - ※ 「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에 의거 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시행

평가기준

- ◈ 평가항목 : 정성 80점, 정량 20점, 가점 4점
- ◈ 정성 : 사업의 타당성 및 목표 적절성 20점,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20점, 인프라 및 기술인력 적절성 20점, 기술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20점
- ◈ 정량 : 지식재산권 및 인증 목표 10점, 기타 성과 목표 5점, 기업신용도 5점
- ♦ 가점 : 입주기업* 가점 1점, 해외수출실적** 가점 3점
 - * 사업공모 마감일까지 입주신청 승인 또는 입주 계약 완료 시 인정
 - **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이 1억 이상~10억 미만 1점 10억 이상~20억 미만 2점 20억 이상 3점
- ◈ 종합평점 :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.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, 산술 평균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, 둘째자리산정)한 종합평점을 산정하되, 종합평점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
- ◈ 순위결정 : 종합평점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결정
 - ※ 동점자 발생시 평가 세부항목 중 '지식재산권 및 인증 목표', '기타 성과 목표', '국외 사업화 방안 적절성'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

7.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
- O 제출서류
 - (필수제출) ①공고서식 제1호~제4호,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 기부 등본, ③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완납증명서, ④중소기업확인서, ⑤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⑥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⑦최근 3년간 재무제표(21~23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) (해당시 제출) ⑧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(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), ⑨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, 매출실적 등의 자료사본, ⑩최근 3년간(22~24년) 직접·간접수출입실적 증빙자료*
 - * 한국무역통계진흥원(직접·간접수출), 한국무역협회(직접수출), '무역정보통합관리 플랫폼'(Tmydata)를 통한 실적 증빙
 - ※ ① 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각 1부 제출, ②~⑩서류는 제출서류 번호로 분류 및 압축(.zip 파일)하여 제출
- 신청기간 : 2025. 2. 12.(목) ~ 3. 13.(목) 18:00
 - ※ 유의사항: 3. 13.(목) 18:00 이후 제출은 무효처리되므로 기간 엄수
-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waterrnd6415@keco.or.kr)
 - ※ 이메일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053-601-6117(전혜원주임), 6115(우민준주임)을 통하여 확인 가능

8. 참여기업 책무 및 사업비 정산

- 별첨의 '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' 참조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서 사업비 관리 및 정산
 - ※ 사업비 집행, 관리 및 정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,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을 따름, 선정 후 수행 기관별 2명 이상 국고보고금 사용교육 필수 참여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함

9. 향후일정

※ 추진일정은 내·외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일정(안)	주요 추진 내용
'25. 2. ~ 3.	공모 및 선정평가
\	T
' 25. 4.	협약체결 및 착수회의
	lacktriangledown
'25. 9.~10.	지원사업 중간점검
	lacktriangledown
'25. 12.	연차평가 및 최종평가

10. 기타사항

- 지원사업 선정 후 연차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수행기관이 사업신청 시 제안한 정략적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잔여사업기간에 대한 협약해지를 할 수 있고, 협약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됨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술에 대하여 중복지원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됨
- 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관리법,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,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, 공단 물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

11. 문의처

▷ 주 소 :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

▷ 담당부서 :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

▷ 연 락 처 : 053-601-6114(구정은 과장), 6115(우민준 주임)

붙임 으뜸 스마트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

항 목		세부항목		배점구분				
				우수	보 통	미흡	불량	점수
	합 계							
정 성 (80)	사업의 타당성 및 목표	○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	10	8	6	4	2	
	적절성 (20)	○ 사업목표·성과목표의 적절성	10	8	6	4	2	
	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의	○ 물산업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및 사업화 역량	10	8	6	4	2	
	개복리 합리성 (20)	○ 수행내용의 충실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	10	8	6	4	2	
	인프라 및 기술인력 적절성 (20)	○ 물산업클러스터 연구 및 실증시설 활용도	5	4	3	2	1	
		○ 분산형 실증화시설 활용도	5	4	3	2	1	
		○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	10	8	6	4	2	
	기술제품의 사업화	○ 국내 사업화 방안 적절성	10	8	6	4	2	
	가능성 (20)	○ 국외 사업화 방안 적절성	10	8	6	4	2	
정	지식재산권 및 인증 목표 (10)	! 인증 목표 7점이상→7점, 6점이상→6점, 5점이상→5점, 4점이상→4점,						
량 (20)	기타 성과 목표 (5)	 신청기업 사업신청서의 성과목표 점수로 평가 10점이상→5점, 8점이상→4점, 6점이상→3점, 4점이상→2점, 2점이상→1점, 2점미만→0점 ※ 산출: (연차별 성과목표 점수 합계) ÷ (전체 사업기간(년)) 						
	기업 신용도(5)	○ 신청기업의 신용평가등급 - 조달청 기업신용도 평가방법 적용						
	→ 1점 (4) ○ 입주기업 여부 : 1점 ○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1억 이상~10억 미만 1점, 10억 이상~20억 미만 2점, 20억 이상 3점							

□ 기업신용도 평가방법

	평점		
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	70 (1)
AAA, AA+, AA0, AA- 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5.0 (배점의 100%)
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4.5 (배점의 90%)
B+, B0, B-	B-	B+, B0, B-	4.0 (배점의 80%)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3.5 (배점의 70%)

※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르되 일부 배점 및 항목은 본 사업 지원계획에 맞게 수정

[주]

- 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 또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,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,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.
 - ※ 평가등급서는 반드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하며, 그 외 용도로 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(미제출시 최하점 평가)
- 2.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
- 3.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,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.
 - (예) (A사 점수×A사 지분율)+(B사 점수×B사 지분율)+(C사 점수×C사 지분율)